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3. 4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1993.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 종 익)

가. 제안이유

건축 관련법령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준수하고자 함.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나. 주요골자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건축법령의 조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 병 천)

건축 관련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건축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